

이메일로 근로계약을 작성.교부했을 때 서면작성.교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

1. 의견 및 근거
2. 교부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예외의 경우

원칙적으로 서면작성·교부의 의미는 "종이로 된 문서작성"을 의미

판단내용	근거
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"법 조항상 '서면'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,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·결재·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조항상 '서면'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입법취지에 부합한다"고 판결한 판례에 비춰 볼 때, 원칙적으로 서면작성·교부의 의미는 문서작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.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해 모든 업무를 이러한 전자결재 체계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이메일 통보 등을 인정할 수 있다.	서울행법 2010구합11269 2010. 6. 18

2. 교부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예외의 경우

“근로기준법 제17조가 2010년 5월 25일 개정되어 **2012.1.1부터 시행**”

